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재나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자 2022재나47 결정

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5819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11 선고 2018가단6918 판결

###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6. 23.

판결 선고 2023. 7.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6. 11. 선고 2018가단6918 판결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58192 판결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9. 1. 접수 제215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또는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9. 1. 접수 제215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중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는 2018. 8. 24.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7. 9. 1. 접수 제21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10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6.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6918).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 1. 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나5819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5.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09587).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1. 4. 15. 재심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재나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임대료를 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사유가 있다.

##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일 뿐,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장유나**

**판사김동희**

**별지**